

관 세 청

수신 수신자 참조 (경유)

제목 2024년도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신규품목 추천 요청

- 1. 우리 청은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량을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편하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「간이정액환급제도」를 운영하고 있으며, 해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과 환급률(수출금액 10,000원당 일정금액)을 책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하고 있습니다.
- 2. 이에 따라, 2024년 수출품목에 적용할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, 현행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품목 이외에 신규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품목이 있으면 아래 양식에 따라 2023.10.4.(수)까지 추천하여 주시고, 관내업체 및 회원업체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품목번호 (HSK 10단위)	품명/규격	신청업체명	업체담당자 및 연락처	사업자번호	수출금액 1만원당 관세부담액

☞ 수출금액 1만원당 관세부담액 = 개별환급액(합계)/수출금액(합계)*10,000원. 끝.

과

수신자 전국세관 환급부서장, 대한상공회의소회장, 중소기업



협회장, 한국관세사회장

전결 2023.9.1. 세원심사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정니나 전익표

협조자

시행 세원심사과-2055

(2023. 9. 1.)

접수

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정부대전청사 1동 4층 관세청 세 / www.customs.go.kr 우 35208 원심사과 (둔산동)

/ 대국민 공개

전화번호 042-481-7877 팩스번호 042-481-7879 / jnina@korea.kr

청렴한 당신, 행복한 국민, 신뢰받는 관세청